

결 정

2018 - 2021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1.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2. 東亞日報 발행인 임 채 청

주 문

스포츠경향 2018년 1월 5일자 11면 「악마·귀신 잡는 도인이 있어 화제」 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월 24일자 B9면 「귀신(빙의)잡는 도인이 있어 화제」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스포츠경향, 東亞日報의 적시 광고들은 憑依(빙의)와 鬼神病 (귀신병)을 낮게 해 준다는 내용이다.

광고는 빙의와 귀신병에 걸리면 『악귀에 조종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찍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 된다고 주장한 뒤 그 주요 증상들을 열거하고 있다.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신병과 귀신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등이다.

이들 귀신병은 ‘대한불교 자비사’와 인연이 되면 모두 해결되고,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하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들 광고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들은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2월 7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담	김용담
위원	정승호	정승호
	장명국	장명국
	이동현	이동현
	장인철	장인철
	김규식	김규식
	강희	강희
	하윤수	하윤수
	김영모	김영모
	박현갑	박현갑
	박미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